

김포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3167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2023. 3. .
제출자 김포시장

1. 제안이유

- 2022년 9월 조직개편으로 안전담당관이 신설됨에 따라 김포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을 현 안전담당관 체제에 맞게 변경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민관협력위원회 구성사항(위원) 일부 변경(안 제3조)
- 나. 민관협력위원회 구성사항(간사) 변경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- 나. 관계법령 및 현행 자치법규 : 붙임
- 다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- 라. 그 밖의 사항
 - 1) 입법예고 : 생략(「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항)
 - 2) 부서협의 결과
 - 가) 규제사전심사 : 해당 없음
 - 나) 성별영향평가 : 원안동의
 - 다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 - 3) 중앙 및 도 관련부서
 - 가) 중앙부처 :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
 - 나) 경기도 : 소통협치관

김포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김포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안전담당관

제7조제1항 중 “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” 를 “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” 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·소		안전담당관
입 안 자	실·과·소장 성 명	안전담당관 김 광 식
	팀 장 직위·성명	사회재난팀장 이 순 목
	담 당 자 성명·전화	지방시설서기보 강 은 지(☎2912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구성) ① · ② (생 략)</p> <p>③ 민관협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<u>교통건설국장</u></p> <p>2. (생 략)</p> <p>④ (생 략)</p> <p>제7조(간사) ① 민관협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재난 관리 <u>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.</u></p> <p>② (생 략)</p>	<p>제3조(구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.</p> <p>1. <u>안전담당관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(간사) ① ----- ----- ----- <u>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.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제12조의2(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)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(이하 “중앙민관협력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12. 30.>

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“지역민관협력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③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지역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3. 8. 6.]

김포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김포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김포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김포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(이하 “민관협력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한다.

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
2.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
3.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·제보
4. 재난 발생 시 인적·물적 자원 동원, 인명구조·피해복구 활동 참여,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협의
5. 그 밖의 민관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
제3조(구성) 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 중 당연직 위원장은 부시장이고, 위촉직 위원장은 제3항의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.

③ 민관협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통건설국장
2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(다만,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 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.)
 - 가.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
 - 나.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기관, 단체·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
 - 다.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 - 라. 그 밖에 원활한 민관협력관계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④ 위촉위원의 임기는,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4조(운영)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.

1. 평상시: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재난 대비 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
2. 재난 발생 시: 민간단체, 기업, 협회 및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

제5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,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시장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회의) ① 민관협력위원회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정기회의 외의 회의는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나 위원장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.

②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간사) ① 민관협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재난 관리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.

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.

제8조(수당 등) 민관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」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